

■ 2023년 KTACA 자격규정 개정에 관한 결과 보고

KTACA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규정 개정 경과 및 결과 보고를 공지합니다.

▶ 자격규정 개정의 중점사항

1. 수요자 중심의 수련규정 개정

- 학회 수련규정에 관한 지부 및 수련생들의 지속적인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수련규정을 개정하였다.
- 수련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지부학회의 재량권과 수련생의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 수련감독 수련생의 학회 학술지 논문 게재에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였다.

2. 전문성 역량의 강화

-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수련규정을 신설하고 수련시간을 조정하였다.
- 학회 공개사례발표 시 사전검토 및 일정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였다.

3. 수련규정 시행 안 표준화

- 수련규정의 모호한 내용이나 중의적인 명칭을 명료하게 규정하였다.
- 지부학회 간 통일성 있는 수련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자 하였다.

▶ 상담분과 자격규정 개정 경과 및 결과

1. 자격규정 개정 경과

- 회의 일시 : 2022년 10월 17일 / 11월 11일 / 11월 14일
- 참가자 : 문영주, 박지윤, 박미현, 오수희, 이정상, 팽혜숙, 강남욱

2. 자격규정 개정 결과

- [별첨자료 1 TA상담사] [별첨자료 2 TA상담영역 전문가] [별첨자료 3 TA상담영역 수련감독] 참조

▶ 교육분과 자격규정 개정 경과 및 결과

1. 자격규정 개정 경과

- 회의 일시 : 2022년 11월 28일
- 참가자 : 문호영, 박미현, 김동아, 전우경

2. 자격규정 개정 결과

- [별첨자료 4 TA교육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참조

▶ 자격규정 관련 기타 논의 사항

1. 지부학회장이 아닌 수련감독자의 수련과정 개설여부

- 지부학회장이 아닌 수련감독자들의 수련생 개설은 수련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어려울 수 있다. 다만 함께 수련하고 있는 지부와 연계해서 수련하는 것은 가능하다.

2 대면과 비대면 수련여부

- 대면과 비대면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지부학회장의 재량에 맡기되 대면 수련을 활성화하도록 권유한다.

3. TA상담사 교육 및 자기분석 비용

- TA상담사 단계별 비용을 현재 20만원(수료증비 포함 / 교재비 별도)으로 유지한다. 단 현행 단계별 수련시간을 16시간에서 12시간(점심시간 제외)으로 조정한다.
- 수련생의 자기분석(각본매트릭스 분석 및 라켓시스템 분석 포함)은 비용은 1시간 기준 각 10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부학회별로 자기분석 비용은 수련생과 별도의 계약으로 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

4. 월례회 참가확인증 발급

- 월례회 참가확인증은 학회에서 규정한 양식을 다운받아서 지부학회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거나, 학회 사무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지부학회에서 참가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월례회 활동내역을 학회에 보고한다.

▶ 운영위원회 결정 및 시행

1. 자격규정 개정에 관한 위의 내용은 2023년 1월 18일 KTACA 제1차 정기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확정하였다.
2. 개정된 자격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현재 수련 받고 있는 수련생들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 단 현재 수련생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개정 전 계약한 수련규정을 선택하여 심사 받을 수 있다.

2023년 2월 1일

KTACA 자격관리위원장 강남욱

■ 별첨자료 1. 상담영역 교류분석상담사

1. 자격요건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발급하는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한다.

2. 목표와 역할

상담, 교육영역 교류분석전문가와 교류분석수련감독자 및 조직영역의 Trainer, Master Trainer의 지도하에 상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가. 상담·교육·조직 영역에서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강화에 대한 진단, 평가, 조력 및 지도에 대한 기초적 역량 발휘
- 나.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지도 및 상담에 대한 기초 역량 발휘
- 다. 상담기관 및 지부학회의 행정업무
- 라.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상담 보조 업무
- 마. 교류분석에 대한 연구 보조 및 상담 행정 업무

3. 수련규정

과정	세부 항목별 필수 수련 내용 및 시간			비 고
1. 교육	교류분석상담사교육	5단계	60시간	단계별 12시간씩 총 60시간 실시기관 : 본 학회 지부학회
2. 심리검사	자아상태와 인생태도 검사 실시 및 프로파일 분석	20사례	20시간	한 명의 내담자에게 자아상태, 인생태도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을 1사례(1시간)로 인정
3. 자기분석	각본매트릭스 분석 및 슈퍼비전	1회	2시간	자신의 각본매트릭스 분석 후 슈퍼바이저로부터 1회 1시간 슈퍼비전 필수적으로 받은 경우만 1시간의 수련시간 인정
	라켓시스템 분석 및 슈퍼비전	1회		자신의 라켓시스템 분석 후 슈퍼바이저로부터 1회 1시간 슈퍼비전 필수적으로 받은 경우만 1시간의 수련시간 인정
4. 학술대회	학회주관 학술대회 참석	1회	10시간	학회주관 학술대회 참석 1회 당 10시간의 수련시간 인정
5. 월례회	월례회 참석	5회	10시간	지부학회 주최 월례회 참석 1회 2시간의 수련시간 인정 (타 지부학회 월례회 참가증 확인으로 1회 2시간 인정)

6. 윤리교육	학회주관 윤리교육 이수	PASS		학회주관 윤리교육 1회 참석 필수
총 이수시간			102시간	

4. 자격시험

가. 시험의 유형 : 객관식 및 서술형

1) 객관식(4지 선다형) : 1-5단계의 각 단계별 7문항씩 총35문항 (총70점)

2) 서술형 : 1-5단계의 각 단계별 3문항씩 총15문항 (총30점)

나. 검정 내용 및 배점

1) 출제 범위 : 1-5단계 교육내용

2) 배점 : 각 문항(50문항)별 2점, 총100점

다. 합격 기준 : 60점 이상 득점자

라. 출제위원 : 상담영역교류분석수련감독자 및 지부학회장 중에서 위촉

마. 시험 장소 : 서울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으로 하고 장소선정시 응시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시험응시자가 20명 이상인 경우 시험장소 추가설치 가능

바. 검정 관리 : 자격시험관리 위원회 및 사무국

사. 교류분석상담사 필기시험 유효기간은 합격 이후 5년으로 함. (2020.12.17.)

5. 자격의 유지

가. 자격유효 기간 : 5년

나. 자격유지 조건 : 연회비 납부,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 2회 이상 참가, 지부 학회 월례회 2회 이상 참가

6. 윤리강령의 준수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증을 받은 자는 본 학회가 정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본 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 별첨자료 2. 상담영역 교류분석전문가

1. 자격요건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발급하는 상담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한다.

2. 목표와 역할

상담영역 교류분석전문가는 독자적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가. 해당 전문영역에서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
- 나. 해당 전문영역에서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
- 다. 소속지부와 연계성을 가지고, 교류분석상담사 1, 2, 3단계의 교육 및 과제지도(단, 수료증은 소속 지부학회를 통해 발급 가능)
- 라. 교류분석에 대한 연구
- 마. 상담기관 및 지부학회의 설립 및 운영(본 학회 지부학회 설립요건 심사 규정에 의함)

3. 수련규정

교류분석상담사 교육 5단계까지 모두 수료한 자 및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소유자는 각 조항에 해당하는 수련요건 및 필요시간 이상의 수련을 해야 하며, 다음의 수련요건이 충족된 경우 자격취득 수련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가. 상담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자격심사 신청은 수퍼바이저와 수련 계약 후 최소 1년이 경과해야 하며 그 이전에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 나. 수련생은 본 학회의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의 책임 하에 수련내용을 완료한다.
- 다. 수련수첩 작성은 학회가 발간한 수련수첩에 제시된 방법에 따른다.

과정	세부 항목별 필수 수련 내용 및 시간		비 고
1. 교육	전문가 단계교재 (기존 5단계 교재+ 주제별 교재 자유선택)	12시간 (점심시간 미포함)	-단계별 6시간씩 총 12시간 -실시기관 : 본 학회 지부학회 -교재 : 본 학회 상담전문가 교재 5단계 중 교재 2권을 지부학회가 선택하여 주교재로 함 -교재구입여부는 자유 -단계 교육수료증은 학회에서 발급 (단계별 발급비용 1만원)
2. 상담현장 실습	기관실습	80시간	-실습 기관 : 본 학회 수련감독 기관, 공공, 민간 상담기관 -실습 기간 : 1년 이상 -실습 내용 : 상담자 경험(최소 40시간 필수), 행정보조, 접수면접, 교육, 심리검사, 상담사 교육 (1-3단계) 코리더 경험 등

3. 개인상담 (슈퍼비전)	교육분석(내담자 경험)	10시간	인정시간 : 1회당 1시간
	개인 슈퍼비전	10시간	-최소 3사례 이상 -인정시간 : 1회당 1시간
	소그룹 슈퍼비전	1시간	-슈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 1인 -슈퍼바이지 : 5회기 이상 본인 진행 상담사례 -사례 수 : 1사례 -인정시간 : 1회당 1시간
	소그룹 슈퍼비전 참가	3시간	-지도자 : 본 학회 수련감독 1인 -참가자 : (참가자 2인 이상) 3회(3시간) -인정시간 : 1회당 1시간
	지부 공개사례발표	2시간	-슈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 2인 -슈퍼바이지 : 1인의 수련감독에게 지도받은 상담사례 1사례(5회기 이상 진행) -발표횟수 : 1회 -인정시간 : 1회당 2시간
	공개사례발표회(학회 또는 지부) 참가	10시간	-사례 수: 5사례 참가 -슈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 2인 -인정시간 : 1사례당 2시간 -참고 : 1일 최대 3사례 6시간 인정
4. 집단상담	집단원 경험	24시간	-지도자 : 본 학회 수련감독 -집단시간 : 집단원 경험 24시간
5. 기타요건	월례회 참가	10시간	-참가횟수 : 5회 이상 -인정시간 : 1회당 2시간
	학술대회 참가	10시간	-참가횟수 : 1회 이상 -인정시간 : 1회당 10시간 인정
6. 학술 및 연구활동	학술지 논문게재 또는 학회 공개사례발표	10시간	-본학회 학술지 논문(50%)게재 또는 학회주관 공개사례발표 1회(10회기 이상 진행 사례) -수련감독자인 지부학회장 포함 상담영역 슈퍼 바이저 2명
7. 윤리교육	학회주관 윤리교육 이수	PASS	-학회주관 윤리교육 1회 참석 필수
총 이수시간		182시간	

4. 자격시험

수련수첩 심사 및 구술고사. 면접

5. 자격의 유지

가. 자격유효 기간 : 5년

나. 자격유지 조건 : 연회비 납부,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 2회 이상 참가, 지부학회 월례회 2회 이상
참가

6. 윤리강령의 준수

상담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자격증을 받은 자는 본 학회가 정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본 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 별첨자료 3.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1. 자격요건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발급하는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한다.

2. 목표와 역할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는 전문적 능력과 상담자 교육 및 훈련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가. 전문영역에서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
- 나. 전문영역에서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
- 다. 해당 전문영역에서 교류분석상담사/전문가/수련감독자를 준비하는 수련생의 교육 및 수련
- 라. 해당 전문영역에서 교류분석상담사/전문가/수련감독자를 준비하는 수련생의 수련내용평가, 인준 및 추천
- 마. 교류분석에 관한 연구 및 저술 활동, 슈퍼비전 활동
- 바. 상담기관 및 지부학회의 설립 및 운영(본 학회 지부학회 설립요건 심사 규정에 의함)

3. 수련규정

상담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자격소유자는 각 조항에 해당하는 수련요건 및 필요시간 이상의 수련을 해야 하며, 다음의 수련요건이 충족된 경우 자격취득 수련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가.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자격심사 신청은 수련감독자와 수련계약 후 최소 3년 경과해야 한다.
- 나. 수련생은 본 학회의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의 책임 하에 수련내용을 완료한다.
- 다. 수련수첩 작성은 학회가 발간한 수련수첩에 제시된 방법에 따른다.

과정	세부 항목별 필수 수련 내용 및 시간		비 고
1. 교육	교류분석상담사 교육 참관	39시간	-교류분석상담사 5단계 교육 중 세 단계 참관 수업 : 36시간
	슈퍼비전 교육(동영상)		-슈퍼비전 이론과 실제 교육(본 학회 주관) : 3시간
2. 상담현장 실습	기관실습	300시간	-실습 기관 : 본 학회 수련감독 기관, 공공, 민간 상담기관 -실습 기간 : 3년 이상 -실습 내용 : 상담자 경험(200시간 이상 필수. 20 사례 이상), 집단상담, 교육, 심리검사 및 분석 등
3. 개인상담 (슈퍼비전)	교육분석(내담자 경험)	20시간	-슈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 -시간 수 : 20회(1회당 1시간 인정)
	슈퍼비전에 대한 슈퍼비전 7시간 교류분석 강의 슈퍼비전 3시간	10시간	-시간 수 : 10회 (1회당 1시간 인정)
	개인 슈퍼비전	20시간	-슈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 -슈퍼바이저 : 본인 진행 상담사례

			-사례 수 : 1사례당 최대 4회 이내 인정(공개, 집단수비 포함) -시간 수 : 20회 (1회당 1시간 인정)
	소그룹 슈퍼비전 발표	2시간	-슈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 1인 -슈퍼바이저 : 5회기 이상 본인 진행 상담사례 -사례 수 : 2사례 -인정시간 : 1사례당 1시간 인정
	소그룹 슈퍼비전 참가 (2인 이상)	10시간	-지도자 : 본 학회 수련감독 1인 -개인상담 1사례(5회기 이상 진행사례)와 집단 상담사례(5회기 이상 진행사례) -회차 : 10회 이상 참가 -인정시간 : 1회당 1시간 인정
	지부 공개사례발표	8시간	-슈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 2인 -슈퍼바이저 : 1인의 수련감독에게 지도받은 상담 4사례(10회기 이상 진행 사례) -발표횟수 : 4회 -인정시간 : 1사례당 2시간
	학회공개사례	2시간	-학회신청서 : 1사례 (10회기 이상 진행 사례) -슈퍼바이저 : 본학회 수련감독 2인 -1사례당 2시간 인정
	공개사례발표회(학회•지부) 참가	40시간	슈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자 2인 -참가횟수 : 20회 이상 -인정시간 : 1사례당 2시간 -참고 : 1일 최대 3사례 6시간 인정
4. 집단상담	집단상담체험 집단상담 리더 또는 코리더 경험	45시간	-집단상담참가 : 30시간 -집단상담 리더 또는 코리더(공동리더) 경험 : 15시간 ▶ 집단상담 슈퍼비전 1회 이상 : 슈퍼비전 내 용 구체적으로 ※외부집단상담도 포함
5. 기타요건	월례회 참가	30시간	-참가횟수 : 년 5회 이상 -인정시간 : 1회당 2시간
	학회주관 학술대회 참가	30시간	-참가횟수 : 3회 이상 -인정시간 : 1회당 10시간 인정
6. 학술 및 연구활동	학술지 논문게재	10시간	-본학회 학술지 논문 (100%)게재 -2인 이상 공동저자 인정 (수련생은 책임저자 혹은 교신저자)
7. 윤리교육	학회주관 윤리교육 이수	PASS	-학회주관 윤리교육 1회 참석 필수
총 이수시간		566시간	

4. 자격시험

5. 자격의 유지

가. 자격유효 기간 : 5년

나. 자격유지 조건 : 연회비 납부,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 5회 이상 참가, 지부학회 월례회 5회 이상 참가

6. 윤리강령의 준수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자격증을 받은 자는 본 학회가 정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본 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 별첨자료 4. 교육영역 교류분석전문가

과정	세부 항목별 필수 수련 내용 및 기본 수련시간			비고
1. 교육	1단계 교육	6시간	총 12시간	*교육영역 교류분석 관련 최신 동향과 이론 *단계 교육수료증은 학 회에서 발급 (단계별 발급비용 1만 원)
	2단계 교육	6시간		
2. 현장실습	교육현장 실습 및 참관		총 24시간	*유,초,중,고,대,성인교육 현장에서 교류분석 프로 그램 강사로 활동한 시 간(증빙서류 첨부, 수련 기간에 활동한 경우에 한함) *학술대회 및 연구활동 중 교류분석 교육프로그 램 발표 참관(참관증은 지부 또는 지부연합에서 발급)
3. TA상담사 과정 참관수업	교류분석상담사 과정 1,2,3단계 교육 Co-leader 참여	8시간×3회	총 24시간	
4. 전문가 이론수업	교육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이론 수업	3시간× 20회	총 60시간	발표, 토론, 강의 등
5. 교육적 자기분석	교류분석 이론으로 자기분석	10회	총 10시간	교육영역 교류분석 수련 감독과 자기분석
6. 프로그램 슈퍼비전	교류분석 교육 프로그램 프로포절 & 소그룹 슈퍼비전	1회	총 12시간	자신이 개발하고자 하는 교육영역 교류분석 프로 그램 6회기 초안을 수련 감독과 전문가 수련생으 로 구성된 소집단에게 발 표 & 슈퍼비전, 동료 피 드백
7. 월례회 발표	자신이 개발 & 진행한 교류분석 교육프로그램 발표 및 슈퍼비전	1회	총 10시간	프로그램 슈퍼비전을 통 해 자신이 개발 & 진행한 6회기 교류분석 교육프로

				그럼을 소속 지부 월례회에서 발표 & 슈퍼비전(2인, 1인은 외부)
8.학회참석	학술대회 참석	1회	총 10시간	년 1회 학회 참석 필수(1회 참여 10시간 인정)
9.월례회 참석	지부학회 월례회 참석	6회	총 12시간	년 6회 참석 필수 (1회 참여시 2시간 인정)
10.학술 및 연구활동	학술지 논문게재 또는 교류분석 교육프로그램 발표회 발표	논문 1편 또는 교류분석 교육 프로그램 발표 1회	총10시간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 1 편 이상 게재(100% 10시 간 인정-학술진흥재단 기 준에 따름.) 또는 지부학 회 또는 지부연합에서 주 관하는 사례발표회에서 프로그램 발표(수련감독 2인 중 1인은 외부)
			총 184시간	